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추진 방안[案]

1. 그간의 경과	/ 1
2. 등록제 도입 기본방향	/ 2
3. 향후 추진일정	/ 6

1. 그간의 경과

-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재정·세제 등 집중 지원하여 적극 육성, 10여 년간 성장기반을 다짐

* '07년 55개소 2,539명 고용 → '18년 2,122개소 45,522명 고용(취약 27,589명)

* '17년 총 매출액 3조5,530억, 영업이익 발생기업 1,008개소, 월평균임금 162만원

- '07년 법 제정 당시 바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가운데, '10년대 들어 인증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취지의 등록제로의 전환 요구가 더욱 확산·증대

- 인증요건이 지원과 연계됨에 따라 까다롭고(지속가능성 중심 판단),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일자리제공형 약 70%)는 문제제기

* “인증제가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저해하고, 소셜벤처처럼 사회적미션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은 현행 제도에 편입되지 않으며 인증유형을 맞추기 쉬운 기업만 진입하는 효과”(16.12월, 토론회)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 확대·우대 등에 힘입어 창업·진입 수요 증가 예상

* 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정(2천→5천만원, '19),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가치 반영, 도시재생·친환경·사회서비스 등 관련 정부·지자체 사업에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구분(시행)	사회적기업('07년)	협동조합('12년)	자활기업('12년)	마을기업('10년)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목 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근거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기초생활보장법	행안부 지침
개수(중복)	2,126개	14,485개 (233개)	1,092개 (179개)	1,514개 (45개)

※ 소셜벤처(500여 개 추정)

- 법 제정 10년이 된 현재, 등록제 전환으로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사회문제가 사회적기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제3차 기본계획('18.11월 발표)에 등록제 개편을 포함

- 한편, 질적 수준 하락, 정부지원만을 쫓는 偽裝 사회적기업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있어 보완대책 병행 추진

2. 등록제 도입 개편 방향

- (기본 방향) 현행 인증제 요건을 완화하여 등록 요건을 설정*하고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

* 현행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제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기존 인증 요건을 완화한 형태로 개편할 필요

-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고 평가 기능도 강화

◆ 창의·혁신형 사례(未 인증·지정 기업)

- * (카우카우) 우유로 점토 등 친환경 교구 제조('16.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
- * (케이오에이) 캐시미어(몽골) 등 공정무역소재로 제품생산·판매('15. 육성사업)
- * (필더필) 공연 기획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15. 소셜벤처 경연대회 수상)

① 인증제(고용부장관, 7개 요건) → 등록제(시·도지사 위임, 2개요건 폐지)

- 재정지원 사업의 주체,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고려, 시·도지사에 등록 권한을 위임, 등록증을 교부하는 방식 추진
 - 등록증 대여·양도 불가, 폐업·등록 취소 시 시·도지사에 반납, (시·도지사는 고용부장관에게 등록 현황 보고)
- 등록요건은 현행 인증요건 중 조직형태 등 기본적 사항,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징표적 요건은 유지하되, 실적요건은 폐지

② 사회적기업 정의 현실화

- 취약계층 일자리(68.6%)·사회서비스(6.2%, 혼합 9.4%), 지역사회 공헌(4.8%) 외에 기타형(11.0%)도 인증*해오고 있으나, 활성화 미흡
 - * 기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을 판단하여 인증(영9조4호)
- 또한 국제공헌(공정무역), 공유경제(쉐어하우스), 기술기반 벤처 등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가의 인증 장벽이 높고* 지원도 미흡
 - * 인증제가 취약계층 지원 부분을 강조함에 따라 공동 창업, 1인 기업 등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원천적으로 인증이 불가

○ 이에 사회적기업의 정의·목적(법2조·8조)에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을 추가하여 명확화하고,

- 재정지원도 판로·금융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성장 생태계 조성과 자생력 강화 추진

·(법2조 개정)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창의적·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 ‘밑줄’ 정의 추가

< 현행 인증·지정 요건 및 등록제(검토안) 요건 비교 >

구분	現 인증	現 예비	가장 완화된 형태	검토안	사유
기본 요건	①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동일	유지	계약·정부지원 책임소재 등 고려할 때 법인 형태 유지 필요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동일	동일	유지	
징표적 요건	③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동일	폭넓게 인정	목적 정의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요 요건
	④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 6월 내 1회 이상 회의	X	X	유지	* 마을기업도 ‘공동체성’ 요건을 두고 주민참여 의사결정구조 점검
	⑦ 배분가능한 이윤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상법상 회사)	동일	X 혹은 1/2	유지	* 특히 공공조달 등만을 목적으로 한 偽裝 사회적기업 방지에 필요
실적 요건	②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1개월 이상) * 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	완화	X	일부 폐지	無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진입 불가 → 非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인정 필요 (일자리제공형은 3명 유지)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매출액: 노무비의 50% <승> 이상) * 수익성·안정성·성장성 등 고려無	X	X	폐지	현재까지는 지속가능성 중점 검토 → 등록·지원 분리라면 실적과 무관하게 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 * 예비, 창업팀, 소셜벤처 경연입상팀, 클라우드 펀딩 기업 등 진입 가능

③ 평가와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

☞ 등록기업 평가(2단계)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내용도 차별화

○ 등록기업은 기존의 ① 사업보고서(매년 1회 고용부에 제출), ② 경영공시(매년 1회) 외에 ③ 기업평가(유효기간 1년 혹은 2년)를 받게 됨

- 평가된 “사회적기업평가보고서”에 따라 일정기준(절대평가) 이상에만 재정·판로·금융·구매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부처간 협의·통일)

* 「사회적기업평가」를 구성(19.上), 경제적·사회적 성과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평가 실시(19.下부터 시범 목표) → 기준 미달 기업(現 예비수준 미달) 지원 시 사유서 작성, 공공구매 실적 인정 제외 등

○ 기업 평가는 '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현재의 평가지표를 정교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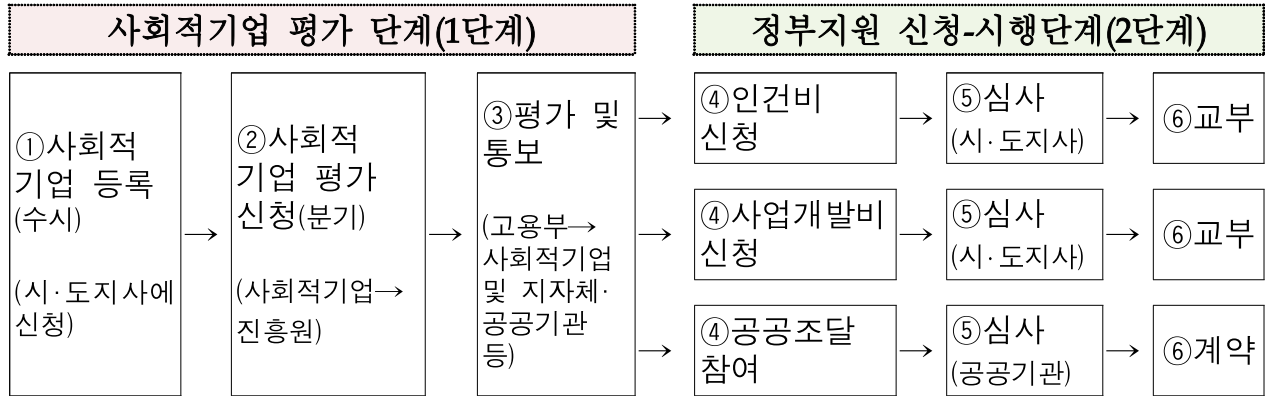
< 現 지표 >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사회적 성과	조직 미션	사회적 미션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사업 활동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수준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사회목적 재투자	6.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조직 운영	운영의 민주성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근로자 지향성	8. 근로자 임금수준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경제적 성과	재정 성과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10. 고용성과
			11. 매출성과
			12. 영업성과
		노동성과	13. 노동생산성
혁신 성과	기업 혁신	혁신성	14.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특히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에 관한 지표를 강화하여 偽裝·부실 사회적기업 판별에 주로 활용

- 이후, 인건비, 사업개발비, 구매, 금융 등 사업별 목적과 사회적 성과를 반영한 각각의 심사안을 마련하여 지원 여부·수준 평가

* 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의 등록 사회적기업은 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 예정



- 등록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1회(4월)로 축소하고, 기재 항목도 영업활동 유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으로 간소화

④ 성장 단계를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 등록기업 중 정부지원·공공조달에 참여가 어려운 초보단계 기업 (예: 예비지정 前 창업성공팀)은 컨설팅, 비즈니스 고도화 등 우선 경영 내실화 지원 확대

- 중기부·금융위 등 타 부처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상품 개선, 비즈니스 고도화, 판로·금융 지원 등 제공

* (예)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TIPS)·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중기부), 사회적가치 신용 반영·사회적경제기업 전용 기금조성 (금융위) 등

- 기업평가 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공공부문의 판로, 금융지원 시 우선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⑤ 지역, 민간 네트워크 역할 강화

-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등 민간의 역할 확대

- 사회적경제 규모화 및 기업 간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컨소시엄,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확대

- 그밖에 사업 발굴 등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당사자조직 등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소통창구 운영**

* 공식적인 의견 전달 채널 구축·상시화(당사자조직들이 既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정책 포럼」(연 4~5회) 등을 활용)

- 또한 부실·偽裝 사회적기업이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평가 제도 외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자정 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발굴·지원할 예정

○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 강화

- 중앙부처, 시·도가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등록기업별 현황, 고용·지원 이력 등 파악 가능한 **통합정보시스템**(진흥원) 재구축 추진(‘20년)
- 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공동 워크숍,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업무의 유기적 연계 촉진

○ 전달체계 정비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사회적기업 평가위원회*로 재편
 - * 진흥원 내 사회적기업평가 사무국을 설치하고,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평가를 위한 심사 서류 접수, 현장 실사(필요시) 등 업무를 지원
- 진흥원 내 사회적경제 지원 및 평가 관련 조직 확대·강화
 - * 사회적경제실 신설(‘19. 15명)

3. 향후 일정

□ 의견수렴: 육성전문위(‘18.12.20), 자치단체(‘18.12.26~27), 현장전문가(‘19.1.10)·공청회(‘19.1.24) 등

□ 입법 일정: 입법예고(40일, 1월말~3월) → 국회제출(8월)

※ 개정안 시행시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 경과조치: 법 개정 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지원 심사 기준을 적용